<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 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53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10-2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2-24

aurapic.kr aura@aurapic.kr

아우라픽 정 보 공 개 서

(주)앤솔로지클럽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8. 27.

(주)앤솔로지클럽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9길 56, 3층

가맹전략팀 / **(비공개**)

Ι.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Ι.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N.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٧.	영업활 동 에	대한 조건 및 제한
M.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아우라	·픽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9길 56, 3층					
(주)앤솔로지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		
클럽	2024.07.12		2024.07.12.	이윤하, 현승주	031-681-7775		031-681-7776	
	법인등록번호	11011	1-9001126 사업자등		루번호 401-8		-86-0310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아우라픽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65, 103호				
대표이사	현승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현승주	031-681-7775	031-681-7776		
대표이사	이윤하	아우라픽	이윤하	031-681-7775	031-681-7776		
감사	이민호	아우라픽	이민호	031-681-7775	031-681-7776		

3.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ㆍ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 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 ·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ㆍ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케르	아우라픽	2024.07.19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65, 103	현승주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아우라픽	
상 호	아우라픽 00점	
상표(서비스표)	아우라픽 Aurapic	서비스표 출원번호:4020230125043
상표(서비스표)	AuraPic	서비스표 출원번호:4020230184232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u> </u>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_	-	_	-	-	-
2022년	_	-	_	36,545	-	-
2023년	-	-	-	255,946		

^{*} 본 수치는 직전 영업자인 '케르'의 영업 기준이며, 2024년 7월 (주)앤솔로지클럽 법인으로 양수도 되었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재무 상황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 건먼어구 	기금	ሚ ጓጠ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 현승수│내표이사│		2021.01~현재	CEO	가맹사업 총괄			
운영 임원	이윤하	대표이사	2024.07~현재	CEO	운영 총괄			
운영 임원	이민호	감사	2024.07 ~ 현재	감사	기기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는 2024년 신생 법인으로 직전 연도 임직원 수에 해당이 없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출원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아우라픽 (상표권)	아우라픽 Aurapic	2023.07.13	40-2023-0125 043	현승주	독점사용
Aurapic (상표권)	AuraPic	2023.10.13	40-2023-01 84232	현승주	독점사용

당사는 상표 소유권자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사용권을 취득하였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상업적 징표 외에도 이를 바탕으로 한 점포구조, 점포디자인, 배색, 간판 등의 외관, 레이아웃, 진열 방법, 품질 등의 관리, 카메라 렌즈의 종류나 아이디어 등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독특한 트레이드 드레스를 포함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아우라픽] 가맹사업 현황

1. [아우라픽]을 시작한 날: 2023.12.10. (1호 가맹 계약체결)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1.01.29.

2. [아우라픽] 연혁

· · · 영업표지 "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아우라픽	현승주	2023.12 ~ 2024.07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65, 103호		
아우라픽	이윤하,	2024. 07 ~ 현재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9길 56, 3층		
	아우라픽	이름 아우라픽 현승주 이유하	영업표지"이름가맹사업 경영 기간아우라픽현승주2023.12 ~ 2024.07아우라픽이윤하, 2024.07 ~ 현재		

3. [아우라픽] 업종

영업표지	업종					
아우라픽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의수나락 	기탁서비스	사진관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아우라픽]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7104	2	2021.12.3	1.	2	2022.12.3°	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_	_	-	_	-	4	3	1
서울	-	-	-	-	-	-	4	3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_	-	_
인천	-	_	_	_	_	_	-	_	_
광주	-	_	_	_	_	_	_	_	_
대전	-	_	_	_	_	_	_	_	_
울산	-	_	_	_	_	_	_	_	_
세종	-	-	_	-	-	-	-	_	_
경기	-	-	-	-	-	-	-	-	-
강원	-	_	_	_	_	_	_	_	_
충북	-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	_	_	_	_	_	_	_	_
전남	-	-	-	-	-	-	-	-	-
경북	-	_	-	-	-	-	_	_	-
경남	-	-	-	-	-	-	-	-	-
제주	_	_	_	-	_	-	_	_	_

^{*} 본 수치는 직전 영업자인 '케르'의 영업 기준이며, 2024년 7월 (주)앤솔로지클럽 법인으로 양수도 되었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아우라픽]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_	_	_	_	_	-
2022	_	_	_	_	_	-
2023	0	3	0	0	0	3

^{*} 본 수치는 직전 영업자인 '케르'의 영업 기준이며, 2024년 7월 (주)앤솔로지클럽 법인으로 양수도

되었습니다.

6. [아우라픽]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아우라픽]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지역	2023년말			연간 판 매출액(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3	영업개월수 6개월 미만	-	-	-	-	_	-
서울	3	영업개월수 6개월 미만	-	-	-	-	-	-
부산	-	해당없음	_	1	_	-	_	-
대구	-	해당없음	_	1	_	-	_	-
인천	-	해당없음	_	-	_	-	_	-
광주	-	해당없음	_	-	_	-	-	-
대전	-	해당없음	_	_	_	-	-	-
울산	-	해당없음	_	-	_	-	-	-
세종	-	해당없음	_	_	_	-	-	-
경기	-	해당없음	_	_	_	-	-	-
강원	-	해당없음	_	_	_	-	-	-
충북	-	해당없음	_	_	-	-	_	-
충남	-	해당없음	_	_	_	_	_	-
전북	-	해당없음	_	_	-	-	-	-
전남	-	해당없음	_	_	_	-	-	-
경북	-	해당없음	_	_	_	_	-	-
경남	-	해당없음	-	_	-	_	-	
제주	_	해당없음	_	_	_	_	_	-

^{*} 본 수치는 직전 영업자인 '케르'의 영업 기준이며, 2024년 7월 (주)앤솔로지클럽 법인으로 양수도 되었습니다.

8. [아우라픽]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아우라픽]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3	8일	
2023	3	(2023년 연말 신규영업개시)	

^{*} 본 수치는 직전 영업자인 '케르'의 영업 기준이며, 2024년 7월 (주)앤솔로지클럽 법인으로 양수도 되었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아우라픽]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자 자축 지출 내역

구분	수단	수단 기간 -	(단위: 취	지출 비용 ^{번원} , 부가세	비고	
1 -	, L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
합계						
	소계	해당없음				
광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소계	해당없음				
판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므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

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우라픽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설비, 오픈행사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990	-	-	-	-
가맹비	0	계약 체결과 동시지급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 계약을 위해 소요된 소멸성비용	
교육비	990	계약 체결과 동시지급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에 소요된 소멸성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계약이행 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0	계약 체결과	가맹금 미지급, 물품 대금	가맹계약 해지시
보증금		동시지급	미지급 등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990
가입비	0
교육비	990
계약이행보증금	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2,500	7,250~			매장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35,000	3,500	별도협의	주문 전	33m ² 기준 (10평)
간판	가맹본부	1,500	-	별도협의	주문 전	30cm 기준
필수설비	가맹본부	33,000	3,300	별도협의	주문 전	매장여건에 따라 변동
서버세팅비 및 운송비	가맹본부	3,000	300	별도협의	오픈 전	매월/ 매출에 따라 변동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별도비용 : 철거, 증설, 소방, 냉난방, 수도배관, 음향, 외부파사드, 각종가구류, 지폐교환 기, 인화지, 소모품 등 견적 외 품목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관련 디자인 설계비 금 330만 원(부가세 포함), 당사의 감리 대가로 금 33만 원 (3.3㎡당 금액/ 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가맹 희망자가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 * 점포 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 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 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 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가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아우라픽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사	총매출액의 7.7%	익월 1일	반환되지 않음	-	-
서버관리비	당사	장당 200원	-	반환되지 않음	-	-
교육훈련비	당사	실비	개별청구	교육	교육실시	교육 필요시

			Г			1
				미실시	이후	(보수/양수교육)
광고분담비	당사	상품광고시 50%	개별청구	광고 미실시	광고실시 이후	-
판촉분담비	당사	상품광고시 50%	개별청구	판촉 미실시	판 촉 실시 이후	교육 필요시 지급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당사	해당없음	_	_	_	_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당사	실비	개별청구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 보수비용	당사	실비	교체 · 보수 후 당일	-	-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당사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	모든금전지급 기일경과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6개월 미만이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서버운영	실 판매 수량/ 서버 운영 현황 점검	월 1회	문의: 가맹관리팀 (비공개)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연 1회	문의: 가맹관리팀 (비공개)
운영관리	가맹사업자의 월 판매량/ 로열티 지급현황 점검	월 1회	문의: 가맹관리팀 (비공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 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기간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8]쪽 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은 당해 가맹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비고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영업을
l 가맹비	없음(양도인의 잔여기간 인정)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사전
	없음(양포인의 선역기간 인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교육비 990(부가세 포함)	가맹비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을은 원활한 양도 양수를 위하여
교육비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4)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즉시 가맹점의 운영을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진기 내부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등을 리셋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지일 또는 계약 종료율로부터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운영매뉴얼 등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 체의 자료는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를 표시하는 시설물 철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 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는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 후에도 1년 동안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영업지역에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종료 이후에는 당사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 채무의 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 \cdot 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sim90\%)$ 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개점 전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별첨1]의 대금 지급방법 (예치금 포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할 금액에 대해서는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17조 참조)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아우라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 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 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스버	품목(단위)	공급	가격	7 년
군인 	품속(단위) 	상한	하한	↑
1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아우라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아우라픽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경

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아우라픽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 ៶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사항 없음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1회 위반: 구두 경고	
ᆙᄖᅯᅁᄊᄑᆎᇚᆁᅯᇫᆮ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2회 위반: 2회 이상	
[별첨3] 상품판매리스트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당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사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공급품목	공급 및 판매불가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 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3	별첨3	워벼근 호페이기에 고기	
[판매상품리스트] 참조	[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하 어주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 본 부	계열회사
아우라픽과 동일한 업종 (사진촬영/ 사진인화 서비스 등)	아우라픽	상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가맹계약서에 표시

- ①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 의 특성,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 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 [해당 구]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탁적 가맹점 운영권을 가집니다.
- ④ 가맹본부는 전항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이 고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르는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재건축, 재

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을"과 **합의하여 영업지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⑥ 해당영업 지역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내상가, 종합 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상권 (이하"특수 상권"이라 함)은 제외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내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상권"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아

우라픽'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아우라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본 수치는 직전 영업자인 '케르'의 영업 기준이며, 2024년 7월 (주)앤솔로지클럽 법인으로 양수도

되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 본 수치는 직전 영업자인 '케르'의 영업 기준이며, 2024년 7월 (주)앤솔로지클럽 법인으로 양수도

되었습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아우라픽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에→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	조문
	39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9조	1항	각호

○ [아우라픽]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9조	1항 2	ᅷ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	1항 2	ᅷ호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로열티, 서버관리비 등의 정기납입경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은 후 1개월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 지 아니하는 등 [아우라픽]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 되는 경우	│ 세川1수 /이 ▮
○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40조 2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제24조 7항(자점매입)규정을 위반하여 자점 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계약존속기간 동안 경업을 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의 양도 및 가맹점을 위탁경영 하게 한 경우	제40조 2항 각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40조 2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 신청 된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맹점본사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점 본사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점본사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	

	배하는 경우	
	맹점사업자가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가맹 검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	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40조 2항 각호
	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본사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 2	제40조 2항 각호
	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 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맹점사업자가 경업을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가맹점본사 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 로얄티, 광고, 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 하거나 "을"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제40조 2항 각호
	맹점사업자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30조 3항
	맹점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 이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0조 4항
	맹점사업자가 노후 된 점포설비의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따른 교체·보수요 성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0조 7항
	맹점사업자가 제23조 제1항의 규정(감독 및 시정요구권)에 의한 가맹점본사 니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 8항
	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가맹 험본사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7:	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정한 매뉴얼 기준에 따른 합리적 관리 기준을 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 - 경우	제40조 2항 각호
	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나니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와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 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점본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 행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 또는 가맹점본사가 지정하는 공급자로부터 정보 가게서 등 문서에 정해진 초도물품 등 기타 설비의 공급 주문을 완료하지 よ은 경우	제40조 2항 각호
	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적정 매장근무자가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 나고 판단 될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	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 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금전의 입금을 완납하	제40조 2항

지 아니한 경우	각호
○ 그 밖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 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0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 월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제40조 2항 각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 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제 40조 2항
경우	각호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 40조 2항
	각호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	
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제 40조 2항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각호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제 40조 2항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각호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	ᅰᄱᆇᇰᅘᅡ
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	제 40조 2항 각호
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 40조 2항

		각호
0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 40조 2항 각호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 40조 2항 각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비 곡개)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 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교육비, 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

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 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신청 → 당사담당팀 검토 → 승인여부통지 →가맹점운영권상속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여부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

가맹점 운영권 관련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관련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영업 중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 여야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행정구역상 동일한 시 내에서] 귀하가 [아우라픽]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사진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아우라픽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연중무휴	연속 3일 이상 휴업 불가/ 7일 전 서면으로 사전승인 득한 후 휴업가능	문의: 가맹관리팀 (비공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제한없음	직접 근무	_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ㆍ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주일	각 지역 가맹관리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CS 문의→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2주일	본사 운영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주일	각 지역 가맹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아우라픽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당	計비율	분담 절차	비고	
수군	24 9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9175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대중매체 광고	
광고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_	_	
	가맹점 개별광고	없음	전액부담			
판촉행사	공동판촉 활동	협	협의 단, 가맹점사업자 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장하는 경품,기념품, 함을 기념품, 함을 등의 기생본부와 가맹점사업자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가 부담		
개별행사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임의 시행	가맹점 개별 시행	
기타행사	행사에 따라 상이	협의 후 진행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 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당사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위약금 으로 지급하며,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6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21조(비밀유지)와 제 22조(경업금지)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

(₩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계약서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을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양당사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 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6)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제38조(손해배상 및 위약금)내용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 **금(330)만원**
 - 2.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잔여 개월 수 X (220)만원**
 - 3. 단, 인테리어, 기기, 시설, 물품공급, 교육 등 이행이 진행된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위약금과는 별도의 책임**을 집니다.
- (8)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 및 담보제공 하 거 나 위탁경영하게 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 (₩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9)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본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서 **1일당 50,000원 × 잔여계약기간일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0)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형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00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 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 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이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관적 인정이 보고 한다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비용(장비·집 기의 교체비 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 의 통일성과	수반하지 않 는 점포환경 개선: 20%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90일 이내에 가맹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경 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단액 중 비례 하는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분할지급 시
절차>
o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
차 : 1차 지급
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 담 액 의
30%, 3차 : 2
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개설 또는 운영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 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9]일 이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협의하여 부담	문의: 가맹관리팀 (비공개)
기맹점시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 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가맹관리팀 (비공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아우라픽]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아우라픽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기기사용법 기기세팅법 고객응대법 등	방문교육	오픈 전 7일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제품 출시 종업원 관리 실무 등	방문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아우라픽]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6시간	990	필수 이수
정기 교육	1일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필요시 이수
특별 교육	1일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필요시 이수
재교육	1일	실비	재교육자 부담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 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될 수 있으 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Ⅳ.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Ī	1	마포	아우라픽 상수점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65, 103

^{*} 본 수치는 직전 영업자인 '케르'의 영업 기준이며, 2024년 7월 (주)앤솔로지클럽 법인으로 양수도 되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5개월	_

^{*} 본 수치는 직전 영업자인 '케르'의 영업 기준이며, 2024년 7월 (주)앤솔로지클럽 법인으로 양수도 되었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본 수치는 직전 영업자인 '케르'의 영업 기준이며, 2024년 7월 (주)앤솔로지클럽 법인으로 양수도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팀(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 공급 기기 등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 공급 물품 등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 판매 허가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